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11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0421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재난 발생 고위험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59조)	2

I.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0421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손명수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4. 9. 24.

다. 회 부 일 : 2024. 9.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 시행령은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재난 발생 고위험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9조(실태점검) ① ----- ----- ----- ----- ----- <u>. 다만,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먼저, 현행법 제59조제1항1)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현행법 제59조제2항 및 제4항²⁾ 등 제59조 조문 전체를 해석해 볼 때, 동 조항의 의미는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주체³⁾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즉, 관리주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는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관리주체에 대한 실태 조사보다는 최근 폭우, 폭설 등 기후 위기가 점차 극심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시설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시설물 붕괴 등으로 대형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특별히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의 이행을 강제하여 국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히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음.

현행법 제11조⁴⁾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시설물⁵⁾은 정기적으로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6조⁶⁾에서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은 지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⁷⁾.

즉, 현행법 제11조 및 제16조를 해석해보면,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A·B·C 등급의 경우에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안전점검등⁸⁾을, D·E 등급의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우에는 1년에 최소 3회 이상의 안전점검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포함한 현행법상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음.

또한, 그 실시 횟수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1회보다 많은 최소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실익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검토의견과 같이 현재도 1·2·3종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과 주기적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1·2·3종 외 시설 중 재난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3종 시설물로 지정⁹⁾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점검·진단 체계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91
